##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03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김교흥・이기헌・소병훈

이학영 • 윤호중 • 문진석

김윤덕 • 권칠승 • 홍기원

허종식 • 모경종 • 노종면

이해식 · 강준현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자"라함)에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충전시설 설치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충전시설 설치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 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 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 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신설>

3. ~ 10.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동 <b>)</b> 기	] 등,	ÒР	റി	<del>ડ</del> ્રી.	ല് റി	റി	ᆀ	ш
<u> 와</u> ^	1 6	<u></u>	<u>긴</u>	인	41	! =1	<u>′ö'</u>	<u>'0'</u>
<u>•</u> 신	]체니	- 재	산성	상의	손	해틭	1	보
상히	├ <i>フ</i> ]	위하	여	보	험에	기	-입	하
여이	⊧ 한ၤ	<u> </u>						
3	제2형	]-에	叫	라	보상	의	책	임
<u></u>	지느	가느	= '	บ ¢	] ţţ	느	과	싀

③ 제2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3. ~ 10. (현행과 같음)

자

(2)	

1. ~ 3.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